

제268회 임시회
2008. 3. 14.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안



건설문화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2008. 3. 14.
건설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제 출 자 : 이연구 의원외 7인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8년 2월 27일
- 회부일자 : 2008년 2월 28일

상정일자 : 제2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2008. 3. 4 :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연구 의원)

제안 이유

- 도내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고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등 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 재정지원의 투명성 제고 및 인센티브제도의 효율성 증가로 충북관광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

- 충북 관광진흥에 기여 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여행사에 대한 재정지원 (안 제4조)
 - 단체 외국인 관광객이나 수학여행단체를 유치한 경우
 - 관광 전세기를 취항시킨 경우
- 시·군에 대한 도비 지원근거 마련 (안 제4조)
 - 관광객유치를 위해 시·군에서 재정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 재정지원의 종류 명시 (안 제5조)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
-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근거 마련 (안 제7조)
 -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검토보고 요지

(건설문화전문위원 신승우)

- 우리도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 및 관광사업자 단체 및 관광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여 충북관광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안

조례 제 호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관광객”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충청북도에 내방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관광전세기”라 함은 여행사에서 외국인관광객 모객을 위해 임차하는 전세편 운항을 말한다.

3. “수학여행단체”라 함은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아래 실시하는 단체 여행을 말한다.

4. “여행사”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5. “관광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단체’라 한다.)”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내·외 관광객유치 지원

제4조(관광객유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사업자 단체 또는 여행사가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경우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단체 외국인 관광객을 충청북도내에 유치한 경우
2. 국내(충청북도 제외) 수학여행단체를 충청북도내에 유치한 경우
3. 관광전세기를 충청북도내에 취항시킨 경우
4. 기타 충청북도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광객유치와 관련하여 시·군에서 재정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도비를 지원한 시·군에 대하여 사업추진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항)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충청북도 관광홍보물
3.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적 지원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적 지원조건 및 범위, 기간,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부터 제8호까지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관광사업 보조금

제7조(보조금) 도지사는 「관광진흥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

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관광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용도) 보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2. 충북관광홍보관 등 운영 및 홍보
3. 관광상품개발 및 관광기념품 공모전
4. 기타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장 보 칙

제9조(감독)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시행되고 사항에 대하여는 본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

외국인단체관광객 유치 신고서

*관광객 팀별 각 1건 서류로 작성

□ 일반사항

업체주소	(㉸)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거래은행		계좌번호	
안내원	직책	성명	핸드폰

□ 외국인관광객 유치현황

[단위 ; 명]

국적	숙박일자	숙박업소명	숙박객 현황			도내관광 (2개소이상)	비고
			계	관광객	여행사관계자		

- 외국인관광객 인원은 Receipt 등 아침식사비 정산인원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자명단 기재사항이 부실한 경우에는 관광객 10명당 1명 기준으로 여행사 관계자로 간주합니다.

□ 이용 항공기 현황

입국			출국			비고
일시	이용공항	항공편	예정일	이용공항	항공편	

- ※첨부서류 1. 여행일정표 및 패키지상품 팸플릿 1부.
 2. 숙박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및 여행자 명단(별지 제8호서식) 1부.
 3. 일반여행업등록증 사본1부(변동 없을 시에는 생략가능)

위 내용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여행업체명

대표 (인)

<별지 제2호서식>

관광객 숙박 확인의뢰 (호텔 및 콘도용)

*관광객 팀별 각각 1건 서류로 작성

1. 여행업체명 : (대표자)
2. 여행사주소 : (☎)
3. 외국인관광객 숙박현황

국 적	숙박일자	숙 박 객 (명)			비 고
		계	관광객	여행사관계자	

*외국인관광객 인원은 Receipt 등 아침식사비 정산인원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외국인단체관광객이 숙박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여행업체명 및 대표자 (인)

호텔 귀하

숙박 확인서 (호텔 및 콘도용)

*관광객 팀별 각각 1건 서류로 작성하십시오

1. 여행업체명 : (대표자)
2. 여행사주소 : (☎)
3. 안 내 원 : (☎)
4. 외국인유치현황

○ 숙박일자 : _____년 _____월 _____일

○ 아침식사비 지급 정산인원 : _____명 (국적 _____)

위와 같이 외국인단체관광객이 숙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주 소 (☎)

숙박업소명 및 대표자 (인)

○○ 여행사 귀하 (여행업체에서는 원본으로 제출)

< 별지 제3호서식 >

전세기취항 유치 신고서

1. 여행업체명

여행사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FAX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거래은행	계좌번호	

2. 전세기 현황

구분	항공사명	항공편	출발지		도착지		비 고
			공항명	출발일시	공항명	도착일시	
입국							
출국							

3. 전세기 탑승 외국인관광객현황 (입국기준)

국적별	탑승 외국인관광객 현황	비 고 (외국의 관련여행사 및 연락처 등 기재)

위와 같이 외국인단체관광객유치를 위한 전세기를 유치하였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여행사 (인)

- ※첨부서류 1. 전세기교류사업 협약서 사본 1 부
2. 외국인단체관광객 명단(별지 제8호서식) 1부.
3. 여행일정표 및 패키지상품 팸플릿 등 1부.

< 별지 제4호서식 >

외국인단체관광객 숙박 확인서

1. 여행업체명 : (대표자)
2. 여행사주소 : (☎)
3. 안 내 원 : (☎)
4. 숙박인원

국 적	숙 박 일 시	외국인 단체관광객 숙박(명)			비고
		계	숙박인원	여행사관계자	

※ 숫자는 한자 또는 한글로 기재(예, 壹拾, 백, 천 등)

위와 같이 외국인단체관광객이 숙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주 소 (☎)
 숙박업소명 및 대표자 (인)

여행사 귀하

<별지 제5호서식 >

수학여행단체 유치 신고서

*단체별로 1건 서류 작성

일반사항

업체주소	(☎)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거래은행		계좌번호	
안내원	직책	성명	핸드폰

수학여행관광객 유치현황

[단위 : 명]

연번	학교명	숙박일자	숙박업소명	숙박객 현황				비고
				계	학생	교사	여행사관계자	
1								
2								

- ※첨부서류 1. 여행일정표 및 패키지상품 팸플릿 1부.
 2. 수학여행단체 학교장 확인서 1부.
 3. 숙박확인서 및 수학여행자 명단 1부.
 4. 여행업등록증 사본1부

위 내용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여행업체명

대표

(인)

<별지 제6호서식>

수학여행단체 학교장 확인의뢰(학교용)

*수학여행단체별 1건 서류로 작성

1. 여행업체명 : (대표자)
2. 여행사주소 : (☎)
3. 수학여행단체 확인현황

학교명	학 년	기 간	수학여행인원(명)			도 내 방문지	도 내 숙박지
			계	학생	교 사		

위와 같이 본 사가 수학여행을 유치하여 실시한 것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여행업체명 및 대표자 (인)

학교장 귀하

수학여행 확인자 (여행업체용)

*수학여행단체별 1건 서류로 작성하십시오

1. 여행업체명 : (대표자)
2. 여행사주소 : (☎)
3. 수학여행단체 확인현황

학교명	학 년	기 간	수학여행인원(명)			도 내 방문지	도 내 숙박지
			계	학생	교 사		

위와 같이 위 업체가 수학여행을 유치하여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주 소 (☎)

학교명 및 대표자 (직인)

○○ 여행사 귀하

(여행업체에서는 원본으로 제출)

<별지 제7호서식>

수학여행 단체 숙박 확인의뢰(숙박업체용)

*숙박팀별 각각 1건 서류로 작성

- 1. 여행업체명 : (대표자)
- 2. 여행사주소 : (☎)
- 3. 수학여행단체 숙박현황

학교명	학년	팀(조)명	숙박객(명)				비고
			계	학생	교사	여행사관계자	

*수학여행관광객 인원은 Receipt 등 아침식사비 정산인원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수학여행단체관광객이 숙박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여행업체명 및 대표자 (인)

숙박업대표 귀하

숙박 확인서 (여행업체용)

*숙박팀별 각각 1건 서류로 작성하십시오

- 1. 여행업체명 : (대표자)
- 2. 여행사주소 : (☎)
- 3. 안내원 : (☎)
- 4. 수학여행단체 유치현황

○ 학교명: , 학년: 년, 숙박팀명: 팀/조

○ 숙박일자 : 년 월 일

○ 아침식사비 지급 정산인원 : 명

위와 같이 수학여행단체관광객이 숙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주소 (☎)
숙박업소명 및 대표자 (인)

○○ 여행사 귀하 (여행업체에서는 원본으로 제출)

관계법령 발췌

□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제4조 (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45조 (지역별 및 업종별 관광협회) ① 관광사업자는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당해분야의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관광협회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지역별 관광협회는 시·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6조 (재정지원)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